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2 발의연월일: 2024. 6. 25.

발 의 자:이수진·송옥주·신영대

이성윤 • 박해철 • 민형배

서영교 • 한정애 • 박홍배

김정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'가사근로자법'이라 함)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,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 지 원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.

이에 가사근로자, 제공기관, 이용자 등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현장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3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
- 3.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4.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-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|--|
| 현 행 <신 설> | 제3조의2(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단체를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로지정할 수 있다.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|
| | 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 |

- 2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업무를 수행한 경우
- 3.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4.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 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